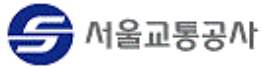


안전한 도시철도, 편리한 교통서비스



## 서울교통공사

수신자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**2018 회계연도 4월 세무업무 처리 지침 알림**

### 1. 관련근거

- 가. 부가가치세법 제32조 [세금계산서 등]
- 나. 부가가치세법 제34조 [세금계산서 발급시기]
- 다. 부가가치세법 제60조 [가산세]

2. 2018년 4월 세무업무 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, 전 소속은 다음사항을 필히 준수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가. 세무처리

구 분	업무처리
세금계산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작성월 4월 매출세금계산서 : <b>5.10.(목)</b>까지 발급</li> <li>- 작성월 4월 매입세금계산서 : <b>5.10.(목)</b>까지 수취 및 전표작성</li> </ul>
법인카드정산	- 4월 사용 분 <b>5.10.(목)</b> 까지 정산 및 회계검토 완료

#### 나. 가산세

-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가 적정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(지연발급 및 지연수취 포함)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발생
- 세금계산서는 실제 대금수수 및 지급과 무관하므로,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맞춰(**ex.계약상 대가수수가 월정액으로 정해진 경우등**) 월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

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의 요망

※ 5월 10일 이내 4월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공급시기 경과로 가산세 납부 시, 회계규정 시행내규 제91조(가산세등의정리방법)에 따른 변상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처리 요망

다. 주의사항

- 월정용역 매입(세금)계산서는 **용역제공 당월 말일자 수취 기준**으로 처리, 검수가 익월 10일 이후에 완료되는 경우에만 검수완료일로 수취
- 매입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, 거래상대방이 **정산담당자 사내메일**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발행하도록 요청하여 수취. 끝.

# 서울교통공사



수신자 가1~가53,나1-2, 다1, 마27, 아1-3,라1-아18,라2-아19,자1-자5

주임 **최경아**

부장 **김종선**

팀장 **황진환**

처장 전결 05/02  
**박태성**

협조자

시행 재무처-1727 (2018.05.02.)

접수

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/<http://www.seoulmetro.co.kr>

전화 전송 / [cka1230@seoulmetro.co.kr](mailto:cka1230@seoulmetro.co.kr) / 대시민공개

부패 '0'의 공기업! 청렴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. 인사 이권청탁 배격